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우편물·택송품에 정확한 식물명 기재 의무 마련 등>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35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우편물·택송품에 정확한 식물명 기재 의무 규정(안 제12조제10항 및 제50조 제3항제4호의2 신설)	3
2. 수입 금지품 및 검역미필품 등 국내 유통 단속 강화(안 제13조의2 및 제47조 제6호의2 신설 등)	13
3. 수입금지 식물 등을 유통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 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안 제4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25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11. 15.

다. 회 부 일 : 2024. 11.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표시되어 있거나 수입통관 과정에서 의심이 된다고 확인된 우편물 또는 탁송품에 대해 식물검역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소지한 휴대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있을 경우 여행객이 신고토록 하여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외직구, 해외여행객이 급증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우편물과 탁송품, 여행객의 휴대품이 늘어나면서 검역을 받지 않은 열대 과일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반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을 받지 않은 채로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까지 이루어질 경우 외래병해충 유입으로 농업 생태계 교란 등 국내 농업 피해가 우려됨.

이에 식물검역을 받아야 할 물품에 대한 검역 누락을 방지하고자 식물을 수입할 경우 우편물,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수입자가 식물명을 기재토록 의무화하고(안 제12조제10항 신설), 국내로 불법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온·오프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최초 수입자까지 추적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0항 및 제13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우편물·택송품에 정확한 식물명 기재 의무 규정(안 제12조 제10항 및 제50조 제3항 제4호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우편물 또는 택송품을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물품포장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도록 그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항·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검역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수송기준을 준수하여 운송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착지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을 수 있다. 1.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하거나 해상 또는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2.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3.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4. 식물검역대상물품 중 농림축산식품부장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① ~ ⑨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관이 서류에 의한 검역 대상으로 고시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③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운송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병해충의 위험성 및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보세운송된 도착지에서 검역을 할 수 있다. ④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해당 검역장소에 소유자가 없거나(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반입된 경우(식물검역대상물품이 반입된 이후 소유자가 없게 되거나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식물검역관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해당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하여야 한다. ⑥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관(通關)에 앞서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안에 들어가서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할 수 있다. ⑦ 통관 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식물검역관은 제7항에 따른 우체국장 또는 탁송업자의 통지를 받으면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검역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	

현행	개정안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u><신 설></u>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세운송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자(격리재배대상식물을 격리재배지 밖으로 반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변조하거나 훼손한 자 3. 제30조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소독·폐기 등의 명령이나 이동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9조의2 및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발견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병해충 발생	<u>⑩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물품포장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여야 한다.</u> 제5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물의 재배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3제3항 또는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자 1의2.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목록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3.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자 3의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유자가 없거나(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장소에 반입된 경우(식물검역대상물품이 반입된 이후 소유자가 없게 되거나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의3.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9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신 설>	③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2조제10항에 따라 현품

현행	개정안
4의2.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3. 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4. 제3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5.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6. 제33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u>검사 결과 물품포장 외부, 상업서류와 품명이 다르거나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u> <u>4의3. ~ 4의7. (현행 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와 같음)</u>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인지할 수 있도록 수입자에게 우편물, 탁송품의 외부포장과 상업서류에 정확한 식물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다. 검토의견

현행법 제12조제7항¹⁾은 통관 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²⁾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이하 “우체국장 등”이라 한다)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³⁾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입업자가 우편물 등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 시 해당 식물명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음에 따라, 우체국장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인계되지 못하고 검역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1) 「식물방역법」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⑦ 통관 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업자
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
3.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4.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가. 선박용품
 - 나. 항공기용품
 - 다. 차량용품
 - 라. 선박·항공기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
 - 마. 용역
5. 국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6.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3)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 우편물(EMS·소포) 포장 외부표시 정상 표시 및 허위 표시 사례 】

ประเทศไทย
Thailand Post

EMS WORLD THAILAND
D-Post Inter

แบบฟอร์มการ CUSTOMS DECLARATION

EE001184875TH

อาจถูกเปิดโดย จน.ศุลกากร May be opened officially

ข้อมูลอ้างอิง (ถ้ามี) (รหัสการค้า/หมายเลขการนำเข้า/รหัสส่งออก)
Importers reference (if any) (HS code/EAT No./Importer code) (Optional)

ชื่อ - สกุล ผู้ส่ง
Name From CACTUSINTER CO.,LTD
ที่อยู่ Address 222/255 Bang Kru Wai Mueang Pathum thani Province รหัสไปรษณีย์ Postcode 12000 ประเทศ Country THAILAND โทร Tel 0955266362 Email cp.thiwan@gmail.com

ชื่อ - สกุล ผู้รับ
Name To [Redacted]
ที่อยู่ Address [Redacted] รหัสไปรษณีย์ Postcode 06902 ประเทศ Country KOREA (REP.) โทร Tel +8201074417947 Email jubyun871@gmail.com

รายละเอียดของรายการ	จำนวน Quantity	น้ำหนักสุทธิ (กก.) Net weight (in kg.)	มูลค่า Value	สำหรับพิธีการศุลกากรเท่านั้น For commercial items only
Plant	1	13.464	5105 THB	HS tariff number 711719

คำเตือน: หากไม่ได้รับของคืนจากผู้ส่งในกรณีที่ไม่ได้รับของคืน
Treat as abandoned () Return (Charge paid by sender) ()

ประเภทสินค้า (Category of item) คำอธิบาย (Explanation)

☒ ของขวัญ Gift ☐ ตัวอย่างสินค้า Commercial sample ☐ สินค้า Merchandise
☐ เอกสาร Documents ☐ สินค้าส่งคืน Returned goods ☐ อื่นๆ Other

หมายเหตุ: กรุณากรอกข้อมูลการนำเข้า/ส่งออกให้ถูกต้อง (Import/Export information)

ค่าขนส่ง (ค่าขนส่ง/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 3660

ค่าประกันภัย (ถ้ามี) 000.00

วันที่ออกใบแจ้งหนี้ 06/12/24

<우편물 기표지 붉은색선 품목명 식물(Plant) 정상 표시>

ประเทศไทย
Thailand Post

EMS WORLD THAILAND
D-Post Inter

แบบฟอร์มการ CUSTOMS DECLARATION

EE 205 800 312 TH

อาจถูกเปิดโดย จน.ศุลกากร May be opened officially

ข้อมูลอ้างอิง (ถ้ามี) (รหัสการค้า/หมายเลขการนำเข้า/รหัสส่งออก)
Importers reference (if any) (HS code/EAT No./Importer code) (Optional)

ชื่อ - สกุล ผู้ส่ง
Name From Songdet Nueagchamnong
ที่อยู่ Address 108 Moo 3 Wangsapheng District Loei Province รหัสไปรษณีย์ Postcode 42130 ประเทศ Country Thailand โทร Tel 0935874149 Email Gofng.Plants@gmail.com

ชื่อ - สกุล ผู้รับ
Name To Ba [Redacted] Gu [Redacted]
ที่อยู่ Address [Redacted] รหัสไปรษณีย์ Postcode 13976 ประเทศ Country South Korea โทร Tel 821087840507 Email Wisdom99@gmail.com

รายละเอียดของรายการ	จำนวน Quantity	น้ำหนักสุทธิ (กก.) Net weight (in kg.)	มูลค่า Value	สำหรับพิธีการศุลกากรเท่านั้น For commercial items only
Stationery	2 Sets	0.25	15 USD	HS tariff number 922

คำเตือน: หากไม่ได้รับของคืนจากผู้ส่งในกรณีที่ไม่ได้รับของคืน
Treat as abandoned () Return (Charge paid by sender) ()

ประเภทสินค้า (Category of item) คำอธิบาย (Explanation)

☒ ของขวัญ Gift ☐ ตัวอย่างสินค้า Commercial sample ☐ สินค้า Merchandise
☐ เอกสาร Documents ☐ สินค้าส่งคืน Returned goods ☐ อื่นๆ Other

หมายเหตุ: กรุณากรอกข้อมูลการนำเข้า/ส่งออกให้ถูกต้อง (Import/Export information)

ค่าขนส่ง (ค่าขนส่ง/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 42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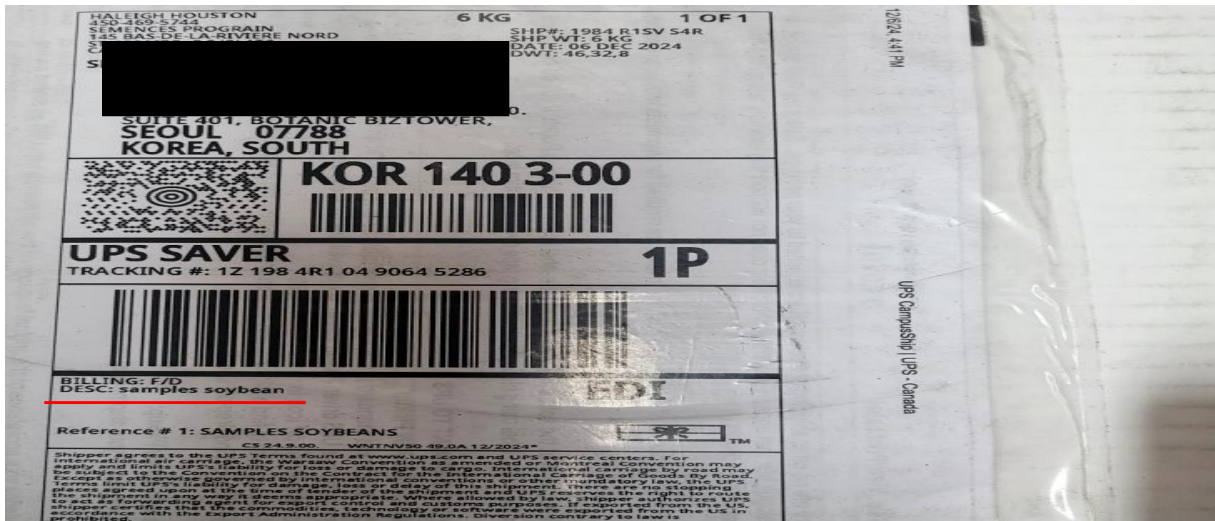
ค่าประกันภัย (ถ้ามี) 612.53

วันที่ออกใบแจ้งหนี้ 6-12-2024

<우편물 기표지 붉은색선 품목명 문구류(Stationery) 허위 표시>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2025. 2. 4.) 제출

【 탁송물품 포장 외부표시 정상 표시 및 허위 표시 사례 】



<탁송품 기표지 붉은색선 품목명 샘플 콩(Samples soybean) 정상 표시>



<탁송품 기표지 붉은색선 품목명 플라스틱 과일(Plastic Fruit) 허위 표시>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2025. 2. 4.) 제출

이에 개정안은 우체국장 등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원활히 인지할 수 있도록 수입자에게 우편물 등의 외부포장 및 상업서류⁴⁾에 정확한 식물명을 기재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과 탁송품의 경우 현행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우체국장 등이 이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을 시, 우편물을 통하여 국내로 직접 유통되어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 등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우체국장 등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등으로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로 하여금 물품포장 외부와 상업서류에 해당 식물의 정확한 품명을 기재할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유사 입법례를 볼 때, 상기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안 제50조제3항제4호의2도 적절한 것으로 보임.

4) [상업서류]

- ①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송금받기 위해 발행하는 상업적 거래 문서로 상품의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음
- ② BILL OF LADING(선하증권) : 화물의 소유권 증명서이자 운송 계약서로, 화물을 선박 또는 비행기에 실었거나 실을 예정을 의미
- ③ PACKING LIST(포장명세서) : 상품의 포장 상태와 물품의 상세 내역을 나타내는 문서로 주로 운송, 보험, 세관 등에서 상품의 내용과 포장 상태를 확인하는 데 사용

【 표시 의무 위반 관련 유사 입법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u>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u> 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u>경고표시</u> 를 하여야 한다.
제175조(과태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300만원 이하의 과태료</u> 를 부과한다.
11. 제1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안 제50조제3항제4호의2의 “현품검사”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현품검사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제12조제10항에 따라 현품검사 결과 물품포장 외부, 상업서류와 품명이 다르거나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를

“제12조제10항에 따라 물품포장 외부, 상업서류에 기재된 품명이 실제 물품과 다르거나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수입 금지품 및 검역미필품 등 국내 유통 단속 강화(안 제13조의2 및 제47조제6호의2 신설 등)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현행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 금지품 및 제12조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을 누구든지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임.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3조의2(금지품등의 유통 금지 등)</u>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등(이하 “금지품등”이라 한다)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하지 못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 다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위험분석을 마친 금지품은 제외한다.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제한된 식물등 3. 제12조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 4.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목재포장재 5. 제13조제1항에 따라 격리재배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품등을 취득·양도·운

현행	개정안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반 또는 보관한 자에게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u>
1.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47조(벌칙) ----- ----- ----- -----.
2. 제8조를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아니하고 식물등을 수입한 자 또는 검역증명서를 위조·변조하거나 그 증명서가 위조·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사용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1. ~ 6. (현행과 같음)
3. 제9조를 위반하여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한 자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자(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4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	
4의3. 제10조제6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 명령이나 소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에 따른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 소비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u><신 설></u>	<u>6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u>
7.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7. ~ 1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른 회수·소독·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의2. 삭제 <2016. 12. 2.> 8.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운송한 자 9. 제22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독·폐기·반송·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 등의 장소 출입 또는 시험용 재료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부당한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신 설>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의3.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내준 자 3의4.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자	제48조(벌칙)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등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한 자 3의3.~3의5. (현행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와 같음)

현행	개정안
4. 제16조제4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3조제2항에 따른 긴급 병해충 방제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26조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7조제2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역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에 합격하여 수출한 자 8의2.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3항 또는 제28조의3제5항에 따른 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사용한 자 8의3.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위조·변조한 자 또는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위조·변조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사용한 자 8의4. 제2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처리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하지 아니한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자 8의5.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목재포장재 소독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자 8의6.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를 발굴한 자 9.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0. 제41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4. ~ 10.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불법 수입식물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수입 금지품 및 검역미필품 등에 대한 취득·양도·운반 및 보관 등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다. 검토 의견

① 현행법 제10조제1항⁵⁾은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 등에 대하여 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제11조⁶⁾는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지역에서 생산 및 경유된 식물 등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제12조⁷⁾에서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각종 검역

5) 「식물방역법」

제10조(수입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

1.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경유는 제외한다)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한다.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6) 「식물방역법」

제11조(수입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등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제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하여는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 대상 국가 및 대상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의 식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7) 「식물방역법」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항·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검역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④ 제12조의2⁸⁾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에 따른 소독처리를 하지 아니한 목재포장재 등에 대한 폐기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⑤ 제13조⁹⁾는 씨앗·묘목 등이 제12조에 따른 병해충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격리재배를 하도록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기 규정들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최초의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경우 처벌을 하고 있는 반면,

수입업자로부터 이를 인계받아 국내로 유통하는 ‘유통업자’에 대하여는 관련 의무 및 처벌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8) 「식물방역법」

제12조의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①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물품의 지지·보호 또는 운반에 이용되는 목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에 따른 소독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소독처리를 한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에 따른 마크(이하 “소독처리마크”라 한다)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한 경우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이하 생략)

9) 「식물방역법」

제13조(격리재배 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씨앗·묘목·알뿌리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제12조에 따른 검역으로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이하 “격리재배대상식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이하 “격리재배지”라 한다)에서 검역하거나 그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할 수 있다.

②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묘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꼬리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목에 개체별 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부착된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변조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의 검역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수입 및 검역 관련 의무 및 처벌규정 비교 】

구 분	수입업자		유통업자
	의무 규정	처벌 규정	의무 및 처벌 규정
수입 금지	제10조제1항	제47조제4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X
수입 제한	제11조	제47조제5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수입 검역	제12조	제47조제6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50조제1항제1호(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0조제3항제2호 등(300만원 이하 과태료)	
목재포장재	제12조의2	제48조의2제1호(300만원 이하 벌금) 제50조제2항제2호(1천만원 이하 과태료)	
격리재배	제13조	제47조의2제1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50조제1항제2호(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수입 금지·제한 및 검역 대상 식물 등 사진 】

1. 수입금지품(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



<열대과일 람부탄> 1

- 과실파리류(시행규칙 제4조 금지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수입금지하는 식물로서, 소독 조치를 통해서도 수입할 수 없으며, 국내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해야 수입 가능



<열대과일 갈라만시>

2. 수입제한품목(안 제13조의2제1항제2호)



<헝가리산 몬스테라묘>

- 헝가리산 몬스테라묘(관상용) 수입검역 결과 식물의 뿌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바나나뿌리썩이선충(시행규칙 제4조 금지 병해충)이 검출되어 해당 식물은 폐기·반송 조치하고,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서식 할 수 있는 생강, 몬스테라묘 등 헝가리산 식물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 조치(법 제11조)하여 수입금지(22.11.2)



<실험실 현미경 선충 사진>

3. 검역받지 아니한 품목(안 제13조의2제1항제3호)



<중국 보따리상 반입 콩, 참깨, 땅콩>

<중국산 건고추>

- 건고추, 콩, 참깨, 땅콩 등은 수입검역 시 병해충 검출이 없으면 수입 가능한 품목이나,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하다 적발된 품목

4. 목재포장재(안 제13조의2제1항제4호)



<일반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일반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물품의 지지·보호 또는 운반에 이용되는 목재)가 소독처리 기준(56℃, 30분 열처리 후 소독마크 표시)에 따라 소독처리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목재포장재 폐기(제12조의2)

5. 격리재배대상품목(안 제13조의2제1항제5호)



<칠레산 포도묘목>



<UAE 올리브묘목>

- 씨앗·묘목 알뿌리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국경검역만으로 규제병해충 유무 판정이 곤란하여 일정 기간(1년 이내) 격리된 시설에서 잠복된 병해충 유무에 대한 검사를 거쳐야 수입가능(법 제13조)
- 칠레산 포도묘목에 대해 격리재배 명령했으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일부를 유출하고 판매하려다 적발(24.1.8)
- 아랍에미리트산 올리브묘목은 규정에 따라 격리재배 명령 이행(23.7.1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2025. 2. 4.) 제출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입 금지 및 제한 식물, 제12조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¹⁰⁾ 등(이하 “수입 금지 식물 등”이라 한다)을 유통(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하지 못하도록 관련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¹⁰⁾ 「식물방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식물검역대상물품”이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및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흙(이하 “흙”이라 한다)을 말한다.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입금지 식물 등은 국내로 유입될 경우 과수화상병 피해 사례¹¹⁾와 같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높아 현행법에 따라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검역을 실시하는 품목임.

그런데, 현행법 상 수입금지 식물 등을 유통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 규정 및 해당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이 부재한바,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수입금지 식물 등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하는 자에게 이를 폐기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르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수입금지 식물 등을 유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보다 엄하게 처벌하려는 것으로,

수입금지 식물 등에 대한 즉각적인 회수나 폐기 등의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과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임.

11) ‘15년 안성 첫 발생 이후 37개 시군 2,346농가 1,245ha 발생, 2,218억원 손실보상금 지급

【 유사 입법례 】

○ 먹는물관리법

구 분	위반행위		벌칙 수준	
	1차	2차	1차	2차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 정수기의 판매 등 (법 제36조 제3항)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 정수기를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등을 한 자 (법 제59조 제11, 12호)	제36조 제3항에 위반되는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 정수기 등의 압류, 폐기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법 제58조 제8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기환경보전법

구 분	위반행위		벌칙 수준	
	1차	2차	1차	2차
판매가 금지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공급판매 (법 제74조제6항)	판매가 금지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법 제90조 제11호)	금지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공급이나 판매 중지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법 제89조 제10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2025. 1. 21.) 제출

3. 수입금지 식물 등을 유통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 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안 제4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현행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식물검역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수입금지 식물 등을 유통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3조(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식물검역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포상금) ① ----- ----- ----- ----- -----.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	1. ~ 3.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6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 명령이나 소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제6항·제8항·제9항, 제13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또는 제30조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	

현행	개정안
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u><신 설></u> 4. 제16조에 따른 소독·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에 사용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자 6.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검역을 받은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에서 유입된 중요한 병해충의 발생 사실을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의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한 금지품등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한 자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 시행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통해 불법 수입 식물을 차단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함.

다. 검토 의견

“포상금”이란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 행정목적의 달성에 기여한 자 또는 어떤 일에 성과를 창출한 자에게 그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함.

포상금 중 위법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경우, 본래 공무원이 하여야 할 위법행위의 지도·단속을 일반 국민이 사실상 수행하게 하는 특수한 제도라는 점에서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¹²⁾

이에 따라, 현행법 제43조제1항에서 “제10조제6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 명령이나 소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식물검역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2)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698p

【 사건금액 등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 】

1. 식물방역법 위반사범 사건금액	포상금액(만원)
① 10 ~ 50만원미만	30
② 50만원 ~ 100만원 미만	50
③ 100만원 ~ 500만원 미만	70
④ 500만원 ~ 1000만원 미만	100
⑤ 1,000만원 ~ 5,000만원 미만	150
⑥ 5,000만원 이상	200
2. 병해충의 종류	
① 관리병해충	30
② 금지병해충	70
주) 동일한 병해충의 신고가 제한된 지역에서 다수 접수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 포상금 지급 현황(포상금 예산(6232-300-310-03) : 1,000만원) 】

지급 년도	지급 건수	지급금액 (만원)	지급기준	지급대상	비고
2009	1	10	- 관리해충 신고	일반인	
2011	1	10	- 관리해충 신고	"	
2012	4	140	-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신고 3건 - 관리해충 신고	"	
2013	3	140	-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신고 - 관리해충 신고 2건	"	
2016	1	70	-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신고	"	
2017	2	30	-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신고 - 관리해충 신고	"	
2018	13	390	- 관리해충 신고	"	
2019	13	390	- 관리해충 신고	"	
2020	12	400	-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신고 4건 - 관리해충 신고 8건	"	
2021	15	560	-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신고 3건 - 관리해충 신고 12건	"	
2022	15	690	-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신고 5건 - 관리해충 신고 10건	"	
2023	14	540	-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신고 3건 - 관리해충 신고 11건	"	
2024	19	750	-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신고 3건 - 관리해충 신고 16건	"	
계	113	4,120			

* 포상금 지급 없는 년도 미기재, '20년 포상금 증액 400→1,000만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2025. 1. 21.) 제출

수입금지 식물 등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과수화상병 피해 사례¹³⁾와 같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입금지 식물 등을 유통하는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통해 수입금지 식물의 국내 유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한 금지품등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한 자”(안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금지 식물 등을 유통하는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는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다음 표 ①, ②, ④에 해당하는 수입금지 식물 등을 최초로 수입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가 없는바, 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13) ‘15년 안성 첫 발생 이후 37개 시군 2,346농가 1,245ha 발생, 2,218억원 손실보상금 지급

【 신고 및 고발 시 포상금 지급 근거 대상 】

구 분	현행법 제43조	개정안 제13조의2제1항
수입금지 식물 등 수입업자	<위반한 자 신고 시 포상금> ①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 ② 제10조제6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 명령이나 소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제6항·제8항·제9항, 제13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또는 제30조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④ 제16조에 따른 소독·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⑤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사용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자 ⑥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검역을 받은 자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제한된 식물등 ④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목재포장재 ‘①, ②, ④ 품목을 수입한 자’를 ‘신고 및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추가 필요
수입금지 식물 등 유통업자	-	<①~⑤ 유통한 자 신고 시 포상금>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제한된 식물등 ③ 제12조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 ④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목재포장재 ⑤ 제13조제1항에 따라 격리재배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

또한, 안 제13조의2제1항¹⁴⁾에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등(이하 “금지품등”이라 한다)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13조의2제1항 이하에서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제한된 식물(안 제13조의2제1항제2호) 등 개정안에 따라 유통을 금지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이 “금지품등”으로 약칭되고 있음.

그런데, 안 제43조제1항제3호의2¹⁵⁾의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한 금지품등’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한 자”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상기 안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중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 각각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로 규정하고 있음.

1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제2205635호)

제13조의2(금지품등의 유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등(이하 “금지품등”이라 한다)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하지 못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 다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위험분석을 마친 금지품은 제외한다.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제한된 식물등

3. 제12조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

4.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목재포장재

5. 제13조제1항에 따라 격리재배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

1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제2205635호)

제43조(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식물검역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의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한 금지품등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한 자

안 제13조의2(금지품등의 유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식물 등(이하 “금지품등”이라 한다)</u> 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하지 못한다.	
안 제43조제1항제3호의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 <u>검역을 받지 아니한 금지품등</u> '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한 자	
안 제13조의2제1항 금지품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등(이하 “금지품등”이라 한다)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하지 못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제한된 식물등 3. 제12조에 따른 <u>검역을 받지 아니한</u> 식물검역대상물품 4. <u>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목재포장재</u> 5. 제13조제1항에 따라 격리재배 <u>검역을 받지 아니한</u> 식물	

따라서, “금지품등”이 약칭하고 있는 개념을 감안할 때, “검역을 받지 아니한”이 두 번 반복되어 규정되고 있음.

또한, 상기 안 제13조의2제1항제4호 “제12조의2제1항 각 호16)에 해당되는 목재포장재”의 경우 별도의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 후 폐기되는바, “검역을 받지 아니한”이라는 상황이 성립되지 않음.

16) 「식물방역법」

제12조의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①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물품의 지지·보호 또는 운반에 이용되는 목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에 따른 소독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소독처리를 한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에 따른 마크(이하 “소독처리마크”라 한다)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한 경우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안 제43조제1항제3호의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한 금지품등’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한 자” 중 “‘검역을 받지 아니한’”을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426
